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재)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I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일반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일반기준(300인 이하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어린이집(5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아전담 어린이집(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영유아 12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자격관련 세부 경력 안내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 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보육업무 경력

-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아동간호 업무

- 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이란?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취득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

– 실시주체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할 지역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대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 20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개정 기준 시행 이전에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라도 사전직무교육 이수 필요

※ 이미 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라도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운데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회는 반드시 이수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이수 사례 예시>

구분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종류(개정법에 의한 원장 자격)				
		가정	영아전담	일반	장애아전담	비고
기취득 자격증 종류	가정			이수		1회 이수
	영아전담			이수		1회 이수
	일반				이수	
	장애아전담					
	40인 미만		이수			1회 이수

* 40인 미만 자격소지자가 2005.1.29. 이전에 따른 일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
- 사례 1 : 현행법(2005.1.30.이후)에 의한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소지자가 2014.3.1. 이후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사례 2 : 종전법(2005.1.29.이전)에 의해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개정법에 의한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사례 3 : 현행법(2005.1.30.이후)에 의한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취득자가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3.1.이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사례 1,2,3 모두 개정법(2014.3.1.이후) 적용에 따라 경력요건 강화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참고]

II 2005.1.30. ~ 2014.2.28.까지 기준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 2005.1.30.~2014.2.28.까지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별표1])을 갖춘 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제출서류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졸업증명서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장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일반기준(300인 이하 어린이집)

자격기준	제출서류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p>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p>	<p>① 간호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간호사 자격증 취득한 후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상세기술 포함)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p>
<p>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① 경력증명서 원본 (공무원 7급 이상 이후 보육 등 아동복지 행정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상세기술 포함)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p>

가정어린이집(5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

자격기준	제출서류
<p>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p>	<p>상기 일반기준에 의함</p>
<p>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p>	<p>①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1,2급) ② 경력증명서 원본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p>

영아전담 어린이집(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간호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5년 이상 아동간호 업무에 종사한 경력- 상세기술 요함)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경력 인정 범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사. 위의 가.~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보육업무 경력

-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 개념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아동간호 업무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 공통 사항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공통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근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아동복지시설/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의 경력증명서 : 근무 시작 당시 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첨부